##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6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김소희·박형수·김성원

이양수・우재준・최수진

이헌승 • 박덕흠 • 성일종

김대식 · 김상훈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(地中)에 저장하거나 산업적·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.

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,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필요한 상황임. 하지만,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.

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

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	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		
포집・수송・저장 및 활용에	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		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	
제39조(보조·융자) ① · ② (생	제39조(보조ㆍ융자) ① ㆍ 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		
	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		
	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		
	<u>을 할 수 있다.</u>		